

< 배당소득 >

1. 배당소득의 의의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으로부터 주주 등이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받는 이익
(포괄주의 과세방식 채택)

2. 범위

(1) 일반배당

내국법인, 외국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2) 의제배당

외관상 배당은 아니나, 실질이 주주에게 배당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경우 배당으로 의제

1) 의제배당의 종류(법인세법과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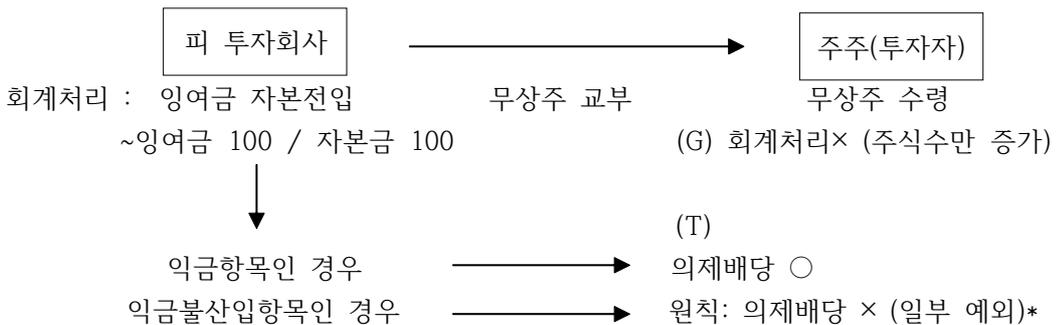
① 합병·분할·해산·감자 등에 따른 의제배당 : 처분이익을 배당으로 과세

구분	귀속시기	의제배당액의 계산
감자, 퇴사, 탈퇴	감자결의일, 퇴사·탈퇴일	대가* - 주식 등의 취득가액
해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합병	합병등기일	
분할	분할등기일	

*대가 : 받은 자산의 시가로 평가

②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 배당

< 과세체계 >



* (예외) 의제배당 ○

- ①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 자본전입하는 자기주식소각이익
 - ② 채무의 출자전환시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한 금액을 재원으로 하는 주식발행초과금
 - ③ 자기주식배정분을 타인이 배정받은 경우 증가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가액
- < 의제배당액의 계산과 귀속시기 >

구분	내용
의제배당액	의제배당 주식수 × 액면가액(주식배당의 경우는 발행가액)
귀속시기	잉여금의 자본전입을 결의한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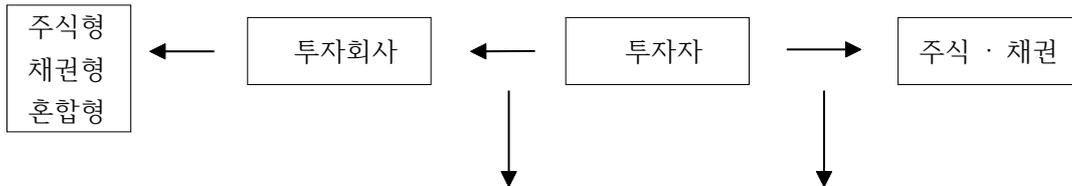
(3) 인정배당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참고 >

구분	수입시기	예)
인정상여	근로제공일	2015년
인정배당	결산확정일	2016년
인정 기타소득	결산확정일	2016년

(4)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국내, 국외)



소득 구분		간접투자시 과세소득	직접투자시 과세소득
주식	매매차익	상장주식 과세 × (비상장주식은 과세 ○)	상장주식 과세 × (비상장주식, 대주주양도, 장 외거래 양도는 과세 ○)
	배당금	과세 ○	과세 ○
채권	매매차익*	과세 ○	과세 ×
	이자	과세 ○	과세 ○

* 채권의 매매차익 과세방법

- ① 원칙(일반적) : 과세 × , 단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된 매매차익은 과세 ○
- ②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이자소득 과세 ○(조건부 과세)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액(간주배당)

(6)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 경영에 참가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공동사업자가 받는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과세(원천징수세율 : 25%)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출자 공동사업자가 아님
 - ① 공동사업에 상호·성명을 사용하게 한자
 - ② 공동사업에 발생한 채무를 무한책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7) 배당이나 분배금을 발생시키는 거래와 파생상품이 결합된 복합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파생금융상품 배당)

(8)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 성격이 있는 것(포괄주의 과세방식)

3. 비과세 배당소득

2015년까지 가입한 재형저축의 배당

4. 수입시기

구분	수입시기
일반 배당	· 잉여금 처분 결의일 · 무기명주식 배당 : 지급 받은날
의제 배당	법인세법과 동일
인정 배당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결산 확정일
국내 · 국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원칙 : 지급 받은날 원본전입특약 있는 경우 : 원본전입일
출자공동사업자 배당	과세기간 종료일
파생금융상품 배당	지급 받은날
유사배당	

5.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1) 계산

배당소득 총수입금액(비과세 · 분리과세 소득 제외)

(+) Gross - up 금액(총수입금액 × 11%)

(-) _____ - _____ (필요경비 인정 ×)

= 배 당 소 득 금 액

(2) Gross - up 이 적용되지 않는 배당

G-up 요건	요건 위배로 G-up 배제되는 배당소득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일 것	① 외국법인 배당 ② 출자공동사업자 배당
· 지급하는 법인에게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한 배당일 것	③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④ 의제배당 ⑦ 익금불산입 항목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주 의제배당 - 자기주식소각이익 자본전입으로 받은 무상주 - 자본잉여금 자본전입시 자기주식 추가배정분 ⑧ 1%평가세율이 적용되는 토지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⑤ 법인세법상 소득공제·세액감면·과세특례를 적용 받는 법인으로부터의 배당 ⑥ 유사배당, 파생금융상품 배당
· 종합과세배당소득이면서 기본세율 적용분일 것	· 분리과세 배당소득 · 종합과세 배당소득 중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14%세율 적용분)

